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14호

별정우체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취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별정우체국 우편 취급수수료

1. 접수우편물에 대한 수수료

대상 업무	취급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우표류+요금증지+별.후납	
1) 월 취급금액 50만원까지 2) 월 취급금액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3) 월 취급금액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4) 월 취급금액 1,000만원 초과	취급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2. 소포우편물	
가. 창구소포·국제소포	
월 취급금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12 상당액
나. 방문소포	
1) 월 취급금액 300만원까지 2) 월 취급금액 300만원초과 500만원까지 3) 월 취급금액 500만원 초과	취급금액의 100분의 12 상당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9 상당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6 상당액
3. 국제특급우편물	
월 취급금액	취급금액의 100분의 11 상당액
4. 나만의 우표	전지 1장당 290원

※ 취급금액 : 판매 또는 접수금액에서 등기·부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월 지급 상한액 : 300만원(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

별정우체국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

1. 우편환 취급수수료
   우편환 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 상당액

2. 우편대체 취급수수료
   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7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3. 공과금 수납수수료
   가. 수납건수가 월 300건이상 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수납건수가 월 500건이상 1,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수납건수가 월 1,500건이상 3,0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3,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수납건수가 월 3,000건 이상이고, 수납금액이 월 6,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가. 예금종류별 취급수수료

예금종별	보통·저축예금	듬뿍우대저축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취급수수료	월평균 잔고의 6/10,000상당액	월평균 잔고의 3/10,000상당액	월평균 잔고의 3/10,000상당액	월평균 잔고의 2/10,000상당액

※ 환매조건부채권은 거치식 예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가입상품과 본부장 전결금리 부여 예금은 수수료 미지급

나. 지급한도액 : 예금종류별 수수료의 총액이 월 32만을 초과할 경우 초과발생수수료의 15%를 추가지급
(단, 추가지급한도액은 월 68만원으로 제한)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15호(2008.4.10.), 2011-53호(2011.10.4), 제2014-4호(2014.1.13)는 각각 폐지한다.